의안번호	2204741
의 뢰 인	박성훈 의원
회 답 일	2024.11.5.
추계번호	24F4158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63조제3항 삭제(유가증권 등의 평가)	○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-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평가액의 20% 가산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3조제3항 삭제(유가증권 등의 평가)	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: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❑ 개정안에 따라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(이하 '최대주주 등'이라 함)의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경우 상속세의 세수 감소 예상

❑ 개정안에 따른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의 할증폐지에 따른 세수효과는 상속 및 증여하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비율 및 가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나 부재하여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○ 참고로 현행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항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현행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대상 기업 등

(단위: 억원)

구 분	내용
할증평가 대상기업	· 일반기업 · 중견기업: 직전3개 사업연도(또는 과세기간)의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* 중견기업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
할증평가 제외기업	· 중소기업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· 중견기업: 직전3개 사업연도(또는 과세기간)의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

○ 그리고 최근 3년간 유가증권의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현황을 살펴보면, 2021년 9조 7,579억원, 2023년 20조 8,432억원 등 2021년에서 2023년까지 3년간 총 66조 1,123억원을 나타내고 있음

[표 2] 최근 3년간 유가증권의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현황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1	2022	2023	합계
상속세	28,616	284,616	149,479	462,711
증여세	68,963	70,496	58,953	198,412
합 계	97,579	355,112	208,432	661,123

자료: 국세청, 「국세통계연보」,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최천규	백경엽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838	choi1009@assembly.go.kr